제427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사물관할 변경>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61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III. 검토의견 ····· 3

1.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사물관할 변경(합의부→단독)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1. 21.

3. 회 부 일 : 2025.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전달책·인출책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이고 기존에는 주로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음. 예컨대 2024. 7.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 18%에 이르고 있고, 일부 법원의 경우 전체 형사 합의부 사건 중 30%를 상회하기도 함.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III. 검토의견

1.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사물관할 변경(합의부→단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1]에 해당하는 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 2. (생 략)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아.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를 말하는 것으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 속함.

제1심의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2]에 따라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하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제1호)', '민사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제2호)', '형사사건 중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특수상해·특수절도·존속폭행 등을 제외한 사건(제3호)' 등은 합의부 관할임.

○ 현행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특수상해·특수절도나 「병역법」 위반 사건,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부정의료업자 처벌, 수표 위·변조,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

---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3)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

<현행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단독관할 사건>

구분	규 정	내 용
가목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	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의 상습법, 그 각 미수죄, 특수공갈과 그 미수죄, 장물죄의 상습범
나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	공동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의 누범가중
다목	「병역법」 위반사건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체역 편입서류 허위작성·제출 등 사회복무요원 등 대리복무
라목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절도등, 장물취득·알선 누범가중처벌
마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 처벌
바목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 위·변조
사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아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 사업주등

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 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의 개정(2023. 5. 16. 개정, 2023. 11. 17. 시행)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사건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의부에서 심판하고 있는 해당 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하나로 규정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등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신속환급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지난 2023. 5. 16. 개정된 법률(법률 제19418호, 2023. 11. 17. 시행)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범위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추가[4]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로 일원화[5]하는 한편,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임[6].

4) 기존 법체계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 한정되어 적용되어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음.

5)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사기죄 적용이 불확실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384호, 2014. 1. 28.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로 처벌하는 체계였음.

6)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2023. 2. 21. 참고

○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합의부로 할 것인지 단독판사로 할 것인지는 사건의 경중과 성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과 접수되는 사건의 추이 및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구성요건이 넓어지고 그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사건의 전형성 또는 중대성 등 그 성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건과 큰 차이가 없는 측면이 있고,

아래 형사공판사건(1심) 평균 처리기간 누년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공판사건 중 단독 관할 사건의 처리기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의 처리기간보다 단기이며,

<형사공판사건(1심) 평균 처리기간 누년비교표>

(단위 : 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의	5.3	5.9	6.6	6.8	6.9
단독	4.7	5.2	5.8	5.9	5.8

자료 : 사법연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의 개정(2023. 11. 17. 시행)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건 중 합의부 관할 사건이 대폭 증가(2020~2023년에는 10건 내외, 2024년에는 3,893건)하고, 합의부 사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건의 비중 역시 크게 증가(2020~2023년에는 0.1% 내외, 2024년은 13.95%)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법원에서는 특정 월에는 합의부 사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하나로 규정하여 반드시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개정안대로 하더라도 합의부가 결정하면 합의부 심판도 가능)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건 사물관할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접수인원 수	
	합의사건	단독사건
2020	-	38
2021	2	70
2022	4	150
2023. 1. 1. ~ 2023. 11. 16.	11	155
2023. 11. 17. ~ 2023. 12. 31.	5	22
2024	3,893	410

주 1. 제1심 형사공판 특별법 중 「통산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건(전체)에 관한 자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 위반사건 통계만 따로 추출되지는 않음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 <2023. 5. 16. 개정, 2023. 11. 17. 시행>
3. 피고인의 대표죄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연도별 합의부 사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건 비중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접수인원 수		
	전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
2020	19,317	-	-
2021	18,769	2	0.01%
2022	21,287	4	0.02%
2023. 1. 1. ~ 2023. 11. 16.	18,230	11	0.06%
2023. 11. 17. ~ 2023. 12. 31.	3,313	5	0.15%
2024	27,911	3,893	13.95%

주 1. 제1심 형사공판 특별법 중 「통산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건(전체)에 관한 자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 위반사건 통계만 따로 추출되지는 않음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 <2023. 5. 16. 개정, 2023. 11. 17. 시행>
3. 피고인의 대표죄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비중은 제출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

<법원별 합의부 사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건 비중 현황>

(단위: %)

법원 \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38.7	26.25	21.52	25.40	32.53	38.03	25.27	43.24	28.16	35.06
서울북부지방법원	14.00	26.67	20.36	33.33	30.43	22.78	31.17	28.30	40.22	41.67
의정부지방법원	3.51	2.08	13.43	24.62	16.67	24.59	22.39	11.48	32.26	23.33
인천지방법원			37.16	19.57	27.93	42.42	33.66	41.74	27.36	23.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7.27	32.65	30.36	31.67	45.28	52.83	71.59	37.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3.89	8.70	15.00	33.33	23.26	17.95	28.57	24.39	51.85
부산지방법원			16.49	6.43	16.67	12.82	11.21	14.66	20.18	32.11
울산지방법원			23.73	23.64	10.23	26.42	12.77	36.21	18.46	28.74
전국 법원	3.10	5.44	11.36	13.04	17.78	18.35	16.91	20.44	21.80	22.35

주. 2024년 합의부 접수인원 수 대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건 접수인원 수 비율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 참고로, 2011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7]의 개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개정, 2011. 12. 9. 시행)으로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과거 단독판사 관할이던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되자,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체로 증거가 명백하고 다툼이 크지 않아 종래 단독판사가 재판해 온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고, 합의부 사건으로 할 만큼 중한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이를 단독판사 관할로 재조정하였던 사례가 있었음.

---

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원조직법 [법률 제7402호, 2005. 3. 24,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률 제11554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①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①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나.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인해 합의부 사건이 급증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사건과 같이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사건은 사기죄로 의율되어 단독판사가 처리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되었지만 심리부담은 전과 동일하여 합의부에서 처리할 필요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사건의 사물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